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명공학육성법」이 개정(법률 제17261호, 2020.5.19. 공포, 2020.11.20. 시행) 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가. 생명공학 육성 및 산업화 촉진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신설).

나. 기본계획 수립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계획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과 계획 수립방법, 절차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5조).

다.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조건 및 임기를 규정하고, 동 위원회의 검토사항에 대해서 규정함(안 제10조 신설).

라. 생명공학분야 육성을 위한 관계중앙행정기관별 세부시책의 내용과 범위를 정함(안 제13조 신설).

마. 생명공학분야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실태조사의 절차와 방법, 실시주기를 규정함(안 제14조 신설).

바. 기술영향평가의 실시 대상, 평가에 포함하는 사항, 자료 제출 요청 등 실시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회 보고 절차를

규정함(안 제15조 신설).

사. 공동·융복합연구의 범위를 정의하고, 동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및 우선 추진 방법을 규정함(안 제16조 신설).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 조사주기 및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기관을 정하고,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활용을 위하여 생명공학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신설).

자. 생명공학분류체계 수립시 타 분야 분류체계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1조 신설).

차. 생명공학 통계조사·분석의 대상과 방법을 정하고 통계조사 실시 주기를 규정함(안 제22조 신설).

카. 규제개선 및 개선방안 검토를 위하여 규제개선 합동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점검반의 규제발굴 방법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규제개선 노력을 규정함(안 제23조 신설).

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정함(안 제26조 신설).

3. 주요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사전규제심사 결과 : 비규제

3) 입법예고 전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외교부
2. 중소벤처기업부
3. 식품의약품안전처
4. 농촌진흥청
5. 산림청
6. 특허청
7. 질병관리본부(청)

제3조(중전의 제2조)제1항 중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 “법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

지의 관계부처의 장”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교육·연구기관의 장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 제목 “(시행계획기본지침의 작성)”을 “(시행계획 기본지침의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중전의 제3조)의 제목 “(생명공학육성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통보)”를 “(시행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및 해당연도 사업계획
3.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생명공학융합정책심

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확정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중전의 제5조)제2항 중 “법 제6조제4항제1호”를 “법 제7조제4항제1호”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6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중전의 제6조)제2항 중 “사고가 있는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8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되며,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6조제2항 각 호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
2. 학계·연구기관·의료기관·산업계에 종사하고 생명공학 육성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심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중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
 2. 생명공학의 육성과 관련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간의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생명공학 육성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⑤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3항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 ⑥ 심의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중전의 제10조) 중 “심의회”를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1조) 중 “심의회”를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을 “관계전문가에게는”으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생명공학 육성 세부시책의 내용과 범위 등)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관계중앙행정기관별 세부시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부장관 : 생명공학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기초연구 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기본계획의 수립과 부처별 정책의 종합조정, 생명공학 관련 기초·원천연구 및 첨단기술의 개발지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 지원, 생명공학 관련 연구기관의 육성·발전을 위한 시책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식물 및 미생물의 육종·품종개량 및 식품소재의 개발 등 농림축산식품분야의 응용연구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한 시책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생명공학 관련 생산기술 및 산업공정의 개발과 개선, 신·재생에너지개발,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기술개발 지원과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

5.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와 관련된 생명공학분야의 응용연구 및 임상연구 지원을 위한 시책

6. 환경부장관: 생물다양성의 보전,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폐수·폐기물의 처리 및 환경오염의 방지 등 환경분야의 응용연구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한 시책

7.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물생물을 이용한 유용물질의 생산과 해양수산물육의 육종·개량 및 식품소재의 개발, 해양오염방지 기술개발 등 해양수산분야의 응용연구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한 시책

제14조(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대상·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 5년

2. 수시조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기술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 ① 법 제10조에 따른 기술영향평가의 대상은 기술적·경제적·사회적 영향과 그 파급효과 등이 큰 생명공학분야의 미래 신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기술영향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기술이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 및 생명공학 관련 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

2. 해당 기술이 경제·사회·문화·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3. 그 밖에 기술영향평가에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회에 보고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공동·융복합연구의 촉진) ① 정부는 공동·융복합연구개발(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연구하거나, 2개 이상의 학제(學際) 간 또는 기술·산업 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수시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군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17조(중전의 제15조)제1항 중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실험지침”을 “실험지침”으로 하며,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8조(중전의 제13조)제1항 중 “관계부처의 장”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부처의 장”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4조를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4조에 따른”으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20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생명공학 정보의 수집·관리·활용 등) ① 법 제19조에 따른 정보의 범위는 생명공학분야 국내외 기술·정책·산업·제도정보와 학술지, 논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과제 및 연구성과정보, 특허정보, 연구개발 인력·시설·장비정보, 기술이전·실용화정보 및 기술창업정보 등을 포함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대하여 생명공학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산하 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국공립 연구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용받은 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의료법인
7. 그 밖에 생명공학 기술개발 연구와 산업화 촉진 등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생명공학 관련 정보 조사는 매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생명공학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활용을 위하여 생명공학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1조(분류체계 수립) ① 정부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생명공학분류체계를 수립할 때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등과 연계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공학기술혁신과 산업 발전 동향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분류체계를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22조(생명공학 통계 조사·분석의 대상과 방법)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표체계 및 관리를 위한 통계 조사·분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명공학 관련 연구개발투자·성과 및 기술수준 등에 관한 사항
2. 생명공학 관련 벤처 등의 창업정보와 기업 성과·투자정보 및 거점별 클러스터 현황 등에 관한 사항
3. 생명공학 관련 연구시설, 장비 등에 관한 사항
4. 생명공학 관련 대학배출 인력 및 기업 고용인력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명공학 연구개발 활성화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는 현장조사, 문헌조사, 설문조사 및 연계

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통계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생명공학 관련 통계조사는 매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제23조(규제 개선 발굴 방법·절차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규제발굴 및 개선방안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 직원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규제개선 합동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개선 합동점검반은 전화조사, 대면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생명공학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발굴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여 심의회의에 보고한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른 보고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제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중전의 제16조)제1항 중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호”로 한다.

제25조(중전의 제23조)제1항 중 “법 제19조제2항”을 “법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4조에서 정하는 정책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
3. 법 제19조에 따른 생명공학 정보의 수집·관리·활용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생명공학 분류체계의 수립
5. 법 제21조에 따른 생명공학 통계 조사·분석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생명공학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신 설>	제2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외교부 2. 중소벤처기업부 3. 식품의약품안전처 4. 농촌진흥청 5. 산림청 6. 특허청 7. 질병관리본부(청)
제2조(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이를 법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관계부처의 장	제3조(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①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생명공학육성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 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시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교육·연구기관의 장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 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 청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기본지침의 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본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6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명공 학융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 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기본지침의 작성)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 --.
제3조(생명공학육성연차별시행계 획의 수립 및 변경통보) 법 제 1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의 관계부처의 장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명공 학육성연차별시행계획(이하 "시 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 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 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 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작 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및 해 당연도 사업계획 3.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생명공학융합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 을 확정된 경우 이를 지체 없 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삭제	제6조(심의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조제4항제1호----- ----- ----- 각 호----- -----. 1. ~ 8. (생 략) ③ 법 제6조제4항제2호의 규정 에 의한 위원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이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통할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제7조(회의) (생략)	제8조(회의) (현행 제7조와 같음)
제8조(간사) ①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제9조(간사) ① ----- -----
②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가 된다.	1명-----.
제9조(삭제) <신설>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되며,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6조제2항 각 호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
2. 학계·연구기관·의료기관·산업계에 종사하고 생명공학 육성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심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중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
2. 생명공학의 육성과 관련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간의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생명공학 육성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3항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⑥ 심의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명공학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
제11조(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수당)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관계전문가에게는-----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 설>	제13조(생명공학 육성 세부시책의 내용과 범위 등) 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관계중앙행정기관별 세부시책의 구체적인 내

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부장관 : 생명공학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기초연구 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기본계획의 수립과 부처별 정책의 종합조정, 생명공학 관련 기초·원천연구 및 첨단기술의 개발지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 지원, 생명공학 관련 연구기관의 육성·발전을 위한 시책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식물 및 미생물의 육종·품종개발 및 식품소재의 개발 등 농림축산식품분야의 응용연구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한 시책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생명공학 관련 생산기술 및 산업공정의 개발과 개선, 신·재생에너지개발,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기술개발 지원과 산업화 촉진을

<신 설>

- 위한 시책
5.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와 관련된 생명공학분야의 응용연구 및 임상연구 지원을 위한 시책
6. 환경부장관: 생물다양성의 보전,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폐수·폐기물의 처리 및 환경오염의 방지 등 환경분야의 응용연구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한 시책
7.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물 이용을 이용한 유용물질의 생산과 해양수산생물의 육종·개량 및 식품소재의 개발, 해양오염방지 기술개발 등 해양수산분야의 응용연구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한 시책
- 제14조(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대상·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 설>

-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 5년
 2. 수시조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5조(기술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 ① 법 제10조에 따른 기술영향평가의 대상은 기술적·경제적·사회적 영향과 그 파급효과 등이 큰 생명공학분야의 미래 신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② 기술영향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1. 해당 기술이 국민생활의 편의 증진 및 생명공학 관련 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
2. 해당 기술이 경제·사회·문화·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3. 그 밖에 기술영향평가에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회에 보고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공동·융복합연구의 촉진)

① 정부는 공동·융복합연구개발(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연구하거나, 2개 이상의 학제(學際) 간 또는 기술·산업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수

시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군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17조(실험지침의 작성) ① ---
-----법 제14조에 따
른-----

-----.

② 실험지침-----
각 호-----

1. ~ 2. (현행과 같음)

제18조(신기술제품의 생산지원)

①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제15조(실험지침의 작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명공학연구 및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험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2. (생략)

제13조(신기술제품의 생산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공학연구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신기술제품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의 장에게 자금의 지원과 제품의 우선구매등 필요한 조치를 요

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u>관계부처의 장</u>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의 지원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 <u>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u> --- ----- ----- ----- --.
제14조(임상시험 및 검정지침의 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u>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u> 소관생명공학관련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정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그 임상시험 및 검정에 관한 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u>경우에는</u>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임상시험 및 검정지침의 작성) ① ----- ----- ----- ----- <u>법 제14조에</u> <u>따른</u> ----- ----- ----- ----- ----- ----- <u>경우는 제외한다.</u>
② 제1항의 임상시험 및 검정에 관한 지침에는 다음 <u>각호</u>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생명공학관련제품의 성질이 특수하여 정할 수 없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 <u>각 호</u>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u>기타</u> 생명공학관련제품에 대한 임상시험 및 <u>검정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	4. <u>그 밖에</u> ----- ----- <u>검정에 관한</u> <u>사항</u>
<신 설>	제20조(생명공학 정보의 수집·관리·활용 등) ① <u>법 제19조에 따른 정보의 범위는</u> 생명공학분야 국내외 기술·정책·산업·제도정보와 학술지, 논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과제 및 연구성과정보, 특허정보, 연구개발 인력·시설·장비정보, 기술이전·실용화정보 및 기술창업정보 등을 포함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대하여 생명공학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u>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산하 연구기관</u>
	2. <u>지방자치단체</u>
	3. <u>국공립 연구기관</u>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신 설>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용받은 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의료법인

7. 그 밖에 생명공학 기술개발 연구와 산업화 촉진 등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생명공학 관련 정보 조사는 매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생명공학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활용을 위하여 생명공학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1조(분류체계 수립) ① 정부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생명공학분류체계를 수립할 때에는

<신 설>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등과 연계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공학기술혁신과 산업 발전 동향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분류체계를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22조(생명공학 통계 조사·분석의 대상과 방법)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표체계 및 관리를 위한 통계 조사·분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명공학 관련 연구개발투자·성과 및 기술수준 등에 관한 사항
2. 생명공학 관련 벤처 등의 창업정보와 기업 성과·투자정보 및 거점별 클러스터 현황 등에 관한 사항
3. 생명공학 관련 연구시설, 장

<신 설>

비 등에 관한 사항

4. 생명공학 관련 대학배출 인력 및 기업 고용인력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명공학 연구개발 활성화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는 현장조사, 문헌조사, 설문조사 및 연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통계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생명공학 관련 통계조사는 매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제23조(규제 개선 발굴 방법·절차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규제발굴 및 개선방안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 직원과 전문가, 이

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규제개선 합동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개선 합동점검반은 전화조사, 대면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생명공학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발굴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여 심의회에 보고한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른 보고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제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의 지정·운영) 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지정한다.

②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2. (생략)

제23조(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

제24조(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의 지정·운영) ①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

② -----
---- 각 호-----.

1. ~ 2. (현행과 같음)

제25조(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① 법 제26조제2항-----

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6.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신설>	----- ----- ----- ----- -----.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u>제26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4조에서 정하는 정책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u> <u>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u> <u>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u> <u>3. 법 제19조에 따른 생명공학정보의 수집·관리·활용</u> <u>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생명공학 분류체계의 수립</u> <u>5. 법 제21조에 따른 생명공학통계 조사·분석</u> <u>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u>
---	---

	<u>정하는 사항</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	
연 락 처	(044) 202-4556